

제1차 부평구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의거 부평구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제1차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6. 8. 27.

부평구청장

제1차 부평구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2027년 ~ 2030년 부평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제1차 부평구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26. 8. 27.(목) 14:00 ~ / 부평구청 3층 상황실
- 참석현황 : 위원 10명 중 10명 참석
- 회의내용 : 위원장 선출 등 5개 안건 의결

□ 회의결과

- 위원장 선출 : 강 동 희
- 위원회 회의 공개여부 결정 : 공 개
- 2027년 월정수당 결정 : 월 2,421,255원 [2026년 월정수당 + 2026년 공무원보수인상률(3.5%)]
- 2027 ~ 2030년 의정활동비 결정 : 월 1,404,200원(잠정액)
- 주민 의견수렴 방식 결정 : 여론조사

□ 향후계획

-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 : 2026. 9월 중
- 제2차 부평구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 2026. 10월 중

부평구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2027년 ~ 2030년 부평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부평구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래와 같이 위원 명단을 공개합니다.

소속 기관·단체	심의회 직위	성명
인천지방법무사회	위원장	강 동 희
부평구 참여예산위원회	위 원	권 남 인
(전)민주평화통일부평구협의회	위 원	박 종 훈
인천언론인클럽	위 원	송 길 호
인천언론인클럽	위 원	원 태 규
인천지방변호사회	위 원	이 경 구
부평구 통장연합회	위 원	이 정 욱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위 원	이 희 경
부평평화복지연대	위 원	장 금 석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위 원	조 미 선

회의록

일 시	2026. 8. 27.(목) 14:00~		장 소	3층 상황실
참석상황	재 적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10	10	0	-
안 건	1. 위원장 선출 2. 회의 공개 여부 결정 3. 2027년 월정수당 결정 4. 2027년 ~ 2030년 의정활동비 결정 5. 주민의견수렴 방법 결정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사회자 (의회법무팀장)	안녕하세요 의회법무팀장 홍은주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있습니다. 관례에 따라 위원님들 중에 연장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오셔서 회의 자료에 대한 사전설명과 위원장 호선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사회자	이의가 없으므로 연장자이신 강동희 위원님을 임시위원장으로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강동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제일 연장자가 아닌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임시위원장을 맡은 강동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제1호)			
임시위원장 (강동희 위원)	통상 위원장 선출을 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회의자료 등에 관한 설명을 듣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주민의견 수렴 방법을 공청회로 결정할 경우, 위원장이 공청회를 주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점을 감안해서 위원장 선출에 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판단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금일 심의 안건 전반에 관한 사항 또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니까?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위원들	없습니다.
임시위원장 (강동희 위원)	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심의안건 및 회의자료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회의 자료 설명)
임시위원장 (강동희 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상정(제1호)
임시위원장 (강동희 위원)	그럼 첫 번째 안건인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방금 의회법무팀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주민 의견수렴 방법을 공청회로 결정할 경우에 위원장은 공청회를 직접 주재 하여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거나 위원장으로 활동하실 의향이 있는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강동희 지금 현재 임시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강동희 위원)	또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B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C 위원	동의합니다.
D 위원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강동희 위원)	부족한 저를 위원장 후보로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희 위원)	그러면 부족한 제가 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직을 수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됐으니까 활동 포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서 부평구 발전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심의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자	발언내용
위원장 (강동희 위원)	각계에서 전문성과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부평구를 대표에서 위촉되신 훌륭한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번 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에 근거하여 구 의원님들의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적정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그 소중한 세금이 합리적이고 또 투명하게 쓰이도록 균형을 잡는 매우 중요한 법정 기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부평구의 재정 여건과 물가 상승률, 또 공무원 보수 인상률, 그리고 무엇보다 부평 구민들의 눈높이와 여론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다양한 전문 실정과 해안을 모아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원활한 회의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그러면 강동희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상정(제2호)	
위원장 (강동희 위원)	제2호 안전 두 번째 안전인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여부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7항에 따라서 의정비심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에서는 회의 비공개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회의록, 위원 명단 및 결정 금액은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전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A 위원	지금 자료를 봤는데 우리 부평구가 인천 구 중에서 지금 제일 인원이 많죠. 제일 많은데 한 과목도 꼴찌가 안 된 데가 없어요. 고충은 큰데 의정비가 제일 작으면 아무리 따라가도 이 부평구가 다른 구한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위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의정비가 있어야 원활하게 활동을 하는데 의정비가 11개 구에서 인원은 제일 많은데 돈은 제일 작으면 의욕이 안 나요. 우리 위원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도로 줘서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1등은 못 하더라도 중간 정도는 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나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희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하실 분 있으면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참고로 이번 2호 안건은 참고로 이번 2호 안건은 이 회의를 공개하는 여부에 대한 안건이고 우리 A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3호 안건으로 또 토론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C 위원	저는 공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차피 상위법에 공개하게끔 돼 있으니까요. 정보 공개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희 위원)	더 의견 표명하실 위의원님들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면 이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에 대해서 그냥 거수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희 위원)	그러면 그 회의 거기에 찬성하신 위원님들은 거수해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그럼 반대하신 위원님들이 없으니까 표결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제3호)

발언자	발언내용
위원장 (강동희 위원)	세 번째 안건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2027년도 월정수당 결정”의 건과 그다음에 네 번째 안건인 의정활동비 결정의 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2027년 월정수당 결정 절차와 의정활동비 결정 절차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회의 자료 설명)
위원장 (강동희 위원)	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월정수당 결정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은 26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안이고요. 제2안은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초과해서 인상하는 안이고요. 제3안은 동결 안건입니다. 제4안은 삭감하자는 안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조금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의원들이 활동을 더욱더 잘 할 수 있게끔 최고 인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희 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 위원	안녕하십니까? E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사기 진작도 상당히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봤을 때는 18분의 의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 부평을 위해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시하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시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의정비는 일괄 동일하다 보니까 의원 18분 중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느 면에서는 주민들이 봤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정액으로 정하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이걸 평가를 해서 진짜 잘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는 그 부분을 강화시키고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좀 감액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위원장 (강동희 위원)	가급적 토론 과정에서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초과해서 인상을 할 것인지, 그 범위 내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금액에서 동결할 것인지, 삭감 할 것인지 네 가지 안 중에서 의견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고적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하는 것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구요. 네 가지 안 중에서 위원님들이 의견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C 위원	제가 의정비심의회를 제가 두 번째하는데요. 그때도 최하위였습니다. 당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 중 하나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방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의 모습도 많이 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달라지고 시민들도 마인드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얘기한 인상률이 3.5%인가 그랬었는데 그때 약2% 정도 밖에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옆에 계신 우리 A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의정비를 많이 줘야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희 위원)	네. 다른 위원님
B 위원	지금 자료 내용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검토를 해봤을 때는 월정수당은 1안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으로 진행이 되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의정활동비는 사실 다른 시군보다 많이 최저치이기도 하고 다른 재정자립도가 유사한 광역시 단위로 봤을 때도 중위수 자체에도 미달되는 너무나 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그걸 좀 인상하는 부분 쪽으로 토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위원장 (강동희 위원)	네. B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의견은 월정수당은 공무원 인상률인 3.5% 내에서 인상을 하고 의정활동비는 인상하는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 그전에 팀장님.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경우에는 지금 우리 위원회의 자체 의결이 아니라 주민여론조사나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 거죠?
사회자	네. 월정수당은 3.5% 이내로 하면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안 거처도 되고, 의정활동비의 경우 어떤 변동이 있어도 주민 의견 수렴을 해야 합니다.
A 위원	그럼 조금 전에 B 위원님 말씀대로 3.5% 인상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희 위원)	네. 의견이 많습니다. 팀장님께 여쭙볼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의정활동비에서 법정 최대금액인 연 1,800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인상률이 몇 프로 정도가 되는 겁니까?
사회자	저희 회의자료 13페이지에서 가운데 표를 보시면 됩니다. 의정활동비를 최대 1,800만 원으로 올렸을 때 인상률은 26.1%입니다.
위원장 (강동희 위원)	26.1%네요. 위원님들 이거를 참고하셔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F 위원	예.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C 위원님께서 예전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당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으로 시나 구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제시해 주신 원칙에 근거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월정수당의 참고 기준으로 되는 네 가지 기준을 주셨잖아요. 주민 수는 거의 같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5%로 이미 결정난 거고요. 재정 능력 지수는 오히려 떨어졌고, 그다음에 의정활동 실적도 인천시 자치 군·구 단위에서 뒤에서 두 번째예요. 사실은 이제 복합 요소가 두 개 다 있다는 거죠. 인구 수로 보면 현재 비슷한 구가 있지만 현재 분부에 따라서 지금 최대의 주민 수를 갖게 됐고 하지만 나머지 재정력은 오히려 떨어졌고 의회 활동을 객관적인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자치법규 제정과 관련해서는 거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사실 동결 얘기하고 싶은데 공무원 분들 보수가 인상이 되는 조건에서 무조건 동결만 외치는 것도 대안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 차이는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발언자	발언내용
F 위원	공무원분들은 전업이잖아요. 겸직이 금지되어 있고 우리 구의원 분들은 사실은 겸직 금지는 아니죠. 이런 조건을 놓고 마냥 똑같다 이렇게만 얘기하기에는 좀 저는 약간 논리적 모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월정수당의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율을 좀 고려해서 3.5% 이렇게 무조건 똑같이 간다기보다는 그 범위 안에서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의정활동비는 사실은 이게 두 개를 나눠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 구의원분들로 보면 이게 연봉 총액으로 그냥 사실은 같이 대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근거가 되는 자치 법규 현황도 썩 그렇게 딱 좋지 않고, 의정활동비를 변경하면 또 공청회나 또 별도의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정활동비는 동결하고 월정수당은 3.5% 이내에서의 인상으로 결정하는 건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하고 꼭 같아야 될 필요 없다면 한 3% 정도에서 인상해서 결정을 완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오늘 저도 위원장이 이전에 위원으로서 제 의견을 한번 개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 의정활동의 여건도 있고, 조례라든지 자치법규 제정 건수나 그런 걸 단순 비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다는 또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서해구, 검단구, 영종구가 생겨서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시 재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해서 일단은 공무원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 범위 내 인상을 저는 동조하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A 위원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동희 위원)	그러면 1안은 월정수당을 3.5% 인상으로 선을 정해놓고요, 2안은 3.5% 초과하여 인상, 3안은 동결, 4안은 삭감 이렇게 4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일단 1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한번 거수로 한번 해 주십시오. 일곱 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3.5% 초과 인상은 없으시죠? 한 분이요. 그다음에 현재 26년도 월정수당을 동결하시는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없으시고요.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진 위원님? 없으시고요. 그러면 한 분이 초과 인상 안에 찬성을 해 주셨고 일곱 분이 3.5%에 해 주신 걸로 해서 27년도 월정수당은 26년도 대비해서 3.5% 인상안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안전상정(제4호)
위원장 (강동희 위원)	그럼 이제 4호 안건인 “의정활동비” 결정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부평구 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현행 월 119만 원 대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의안을 3개로 나눠서 상정토록 할 텐데요. 1안은 26년도 의정활동비 대비 인상안, 2안은 동결안, 3안은 삭감안 이렇게 하고, 금액은 나중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A 위원	저는 1번 안을 제안하겠습니다.
C 위원	저는 동결로 하겠습니다. 대개 보면 군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이라든가 활동비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애경사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표를 보면 부평구가 각 의원들의 발의라든가 각종 활동사항들이 타 군구의 의회보다는 좀 많이 낮거든요. 지금 3.5% 월정수당이 올라갔기 때문에 활동비는 그대로 그냥 동결하는 게 낫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희 위원)	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회의자료 설명(위원 착오인지 사항 정정)] ① 조례 현황 페이지 안내 ② 조례 제·개정 건수 페이지 안내
위원장 (강동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비 건에 대해서 의견 개진해 주세요. 또 토론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그 안이 인상안, 동결안, 삭감안 세 가지 있거든요. 제1안 의정활동비 인상하는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이시고요.
위원장 (강동희 위원)	그럼 동결 안 거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분이시고요.
위원장 (강동희 위원)	일단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6 대 4로, 동결안이 6이고 인상안이 4이므로, 다시 한 번 토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A 위원	저는 우리 구 의정활동비가 구 중에서도 너무 낮으니까 많이는 인상이 안 되더라도 0.1%라도 인상을 시켜갖고 사기를 좀 진작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에서도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구가 지금 제일 낮으니까 이해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동결한다면 쉽게 빨리 끝날 것 같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희 위원)	부평구하고 타 구 하고 관련된 비교 표가 몇 개 있는데 과장님 좀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회의자료 설명] ① 2026년 타구 의정활동비 비교 표 페이지 안내 ② 2024년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인상 결과 안내
위원장 (강동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8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인천 자치구 가운데 의정활동비가 하위권입니다. 연 1,428만 원입니다. 기타 5개 군·구는 지방자치법 시행규칙상 최대 한도인 연 1,800만 원을 적용해서 이미 인상을 했고요. 지금 의견이 한쪽으로 모이지 않아서 여러분들 다시 또 의견을 개진하실 분 계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제가 한 말씀드리면 남동구는 저희보다 회의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을 범위 내에서 하기로 했고 의정활동비는 인상하기로 정했습니다. 서해구는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을 범위 내에서 하기로 했고, 의정활동비는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미추홀구는 둘 다 동결입니다.
위원장 (강동희 위원)	네. 이 점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의견 개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F 위원	어차피 동일한 말씀을 나누는 것 같으니까요, 의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희 위원)	네. 저도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경제 규모하고 활동하는 여건하고 비례해서 봐야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인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삭감안은 지금 안 계시죠? 위원님들 그러면 1안 인상안, 2안 동결안으로 해서 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안 인상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십시오. 여섯 분이시고요.
위원장 (강동희 위원)	2안 동결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세 분이시고요. 그래도 결정이 안되는 상황 인데요.

발 언 자	발 언 내 용
E 위원	잠깐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동희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E 위원	지금 의정활동비 인상 폭을 어느 정도로 했을 때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여기서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다른 구와 분명히 비교를 또 하실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인상을 했는데도 마지막에는 저희가 하위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A 위원	의정비 심의 회의를 우리보다 먼저 한 데가 있다고 하셨는데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자	세 군데입니다.
A 위원	세 군데 결과를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사회자	저희가 자료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희 위원)	그 팀장님 그럼 남동구하고 서해구가 지금 의정활동비 인상을 했는데요. 이 인상률 %는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네요.
사회자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회의자료 설명] ① 2026년 타구 의정비심의회 1차회의 결과 안내 ② 월정수당 3.5% 인상 가정 시 의정활동비 인상률에 따른 부평구 의정비 순위 안내
위원장 (강동희 위원)	네. 빠른 진행을 위해 다시 한 번 거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안 인상안에 대해서 찬성하자는 위원님들 손 들어주십시오. 여덟 분이 지금 다 찬성하는 걸로 해서 1안으로 지금 통과가 된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주민에게 제시할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에 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의정 자료 수집 연구비 또 보조 활동비 합쳐서 월 150만 원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총 의정활동비의 지급 범위를 결정하여 주민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다음 회의에서 주민 의견 결과를 반영해서 의정 자료 수집 연구비와 보조 활동비의 세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께서는 주민 의견 수렴에도 활용한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사회자	[회의자료 설명] 의정활동비 인상률에 따른 의정비 금액 표 안내
A 위원	그럼 군구 내에서 한 중간 정도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사회자	저희가 이제 판단했을 때는 이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서 저희가 순위를 내기 때문에 전체 순위로 중간 정도를 맞춘다고 하면 총액을 한 9% 정도 증가해야 합니다.
위원장 (강동희 위원)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재 5개 자치구에서는 이미 법정 상한 금액인 월 150만 원으로 해서 연간 1,800만 원을 주고 있고 그러면 그 구는 더 이상 높일 수 없으니까 동결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타 구인데 남동구, 서해구 같은 경우에는 인상안을 의결을 했고 미추홀구는 동결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결정을 하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지금 최대 금액을 주고 있는 곳이 5개 이상이 되기도 하고 저희도 오늘 인상안으로 의결된 만큼 연 1,800만 원으로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희 위원)	A 위원님 안은 최대 인상 안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C 위원	네. 저는 동결로 주장을 했었는데요. 지금 A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26.1%는 아닌 것 같고요. 이 회의에서 이제 의견을 모아야 되겠지만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 중간적인 입장을 보면 한 18%나 15%에서 21% 그 사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6.1%는 이거는 국민들한테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15%에서 21% 사이가 저도 한번 계산해 보니까 5위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동희 위원)	해당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회의자료 설명] 의정비 잠정액에 따른 여론조사 예시 안내 (여론조사 시 질문 문항 및 항목별 범위 설정 등)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위원장 (강동희 위원)	13페이지에 의정활동비 표 부분을 보면 6%에서 최대 26.1%까지 기재해놓으셨는데, 위원님들이 우리 구를 중간 정도를 만들어야겠다 싶은 의향을 가지고 계시면 적어도 23%~24% 정도 구간 내에서 해줘야지 그걸로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19% ~ 20% 정도에 그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A 위원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여기서 금액을 정한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요.
위원장 (강동희 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서 다음번 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점 좀 참작하시가지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F 위원	이것처럼 135만 원에서 145만 원 이내 같은 그 구체적인 액수는 어디서 정합니까?
위원장 (강동희 위원)	여기서 정합니다.
C 위원	여기 보면 119만 원이라고 1문항 질문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받는 금액입니다. 이제 119만 원 초과해서 저희가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만약에 180만 원이다. 그러면 180만 원까지가 범위가 되면 한 문항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19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한다 그러면 1번 문항에 160만 원이 들어가고 2번 문항에 163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을 잘 해야될 것 같아요. 맞죠?
사회자	네. 내용은 맞는데요. 금액이 월 최대 150만 원입니다.
위원장 (강동희 위원)	네. 법정 상한 금액이 150만 원이기 때문에 150만 원 범주 내에서 하는데 현재 지금 119만 원이니까 지금 여기는 150만 원에서 119만 원으로 항목을 3개로 했는데 이 문항의 금액도 수정해서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세부설명] ① 현행 의정활동비(월 119만 원) 및 시행령상 지급 가능한 최대 금액(월 150만 원) 안내 ② 의정활동비 인상에 따른 주민의견조사 예시 문항 안내 (현행 금액부터 최대 금액까지 구간별 선택항목 설정 및 조사방법 설명) ③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따른 의정활동비 결정 절차 안내 (예: 1번 항목이 가장 많이 선택된 경우 해당 구간인 월 135만 원~145만 원 범위에서 최종 금액 결정)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위원장 (강동희 위원)	그러면 항목을 꼭 1, 2, 3번을 이렇게 정하는 것이나 구간별 폭은 법정 사항도 아니므로 그걸 참작해서 인상을 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 몇 % 인상할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좀 의견을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G 위원	그러면 오늘은 여기 회의에서 인상 상한선을 먼저 정하지는 그 말씀이신 건가요?
위원장 (강동희 위원)	일단 의정활동비를 인상하자고 했으니까 주민 의견 조사를 할 때 기준 금액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는 걸 정하지는 겁니다.
G 위원	인상 상한선을 정하고 나중에 설문을 하든 공청회를 하든 그 범위를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한테 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이 자리에서 18%로 정하면은 18% 인상액인 140만 원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파이를 세 등분을 해가지고 이제 구간을 나눠서 설문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강동희 위원)	법의 취지는 제가 해석했을 때는 그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인상안 결과를 주면 그 범위에 맞춰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서 다음 회의에서 그러면 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인상을 몇 프로를 할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한번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F 위원	네, 말씀하신 취지대로 하면 구간이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국민들 의견 수렴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등분 말고 다섯 등분을 제시해 주자라고 하는 게 맞을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강동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목을 어떻게 정할지가 위원회가 결정할 일입니다.
A 위원	주민의견수렴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여기서 % 정해서 거기에 금액을 덧입히면 되잖아요.
위원장 (강동희 위원)	그러니까 주민의견수렴을 맡기기 위해서 %를 정하는 것인데, 주민의견수렴하는 것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토대로서 계층적 단계에 불과한 것이지 주민수렴의견 결과에 100% 귀속되어서 하는 것은 이 지방자치법의 취지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우선 오늘 위원회에서는 인상안으로 잡았으니까 의정활동비 인상안에 대해서 %를 좀 정하는 절차를 정해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의견 수렴에 관해서 안을 안건을 1, 2, 3번으로 할 건지 5번까지 늘릴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을 정하면 됩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A 위원	또 발의하실 분 말씀 듣고 빨리 마무리 지읍시다.
F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계속 똑같은 얘기죠. 이게 최대 월 150만 원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 A 위원님께서 최대치 얘기하셨고, 위원장님 24%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아까 15%도 나왔으니, 여기서 위원장님께서 한 3개 안을 딱 정리를 해 주셔서 의결을 해 주시는 게 회의가 더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범주 내에서 조정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야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B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20%대를 인상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체감 온도는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사실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상하게 된다면 12%, 15%, 18% 등 10%대에서 조금 정해서 좀 인상을 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 내용을 참작을 하도록 해서 추후 인상에 대해서 조금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별써부터 20%씩 인상하기에는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 (강동희 위원)	지금 현재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의원들의 임기 동안 일괄로 정하게 되어있지, 연차로 정하게 되어있는 건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4년 치를 한꺼번에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좀 참작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거의 대부분의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최하위 구간을 많이 선택을 하는 것들이 상례이기 때문에 그 점도 참작을 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은 우리 A 위원님 26.1% 최대 월 150만 원으로 하자 하는 안건하고, 지금 24% 구간하고, 그다음에 우리 B 위원님처럼 12%에서 18% 구간, 10%대 이런 정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이 그러면 세 가지를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 의사를 묻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들	예.
위원장 (강동희 위원)	그러면 저는 18% 안, 24% 안, 26.1% 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예. 이의 없습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위원장 (강동희 위원)	그러면 1안이 18%, 2안이 24%, 3안이 26.1% 이렇게 하겠습니다. 1안 18% 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여덟 분이네요. 나머지 24%하고 26.1% 안은 거수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8% 안으로 결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범위는 결정이 되었고요.
	안전상정(제5호)
위원장 (강동희 위원)	그다음에 의견 수렴 방법에 대한 결정권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 따라서 2027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초과하여 인상하거나 의정활동비를 변경하는 경우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드시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공무원께서는 여론조사하고 공청회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회의 자료 설명)
위원장 (강동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월정수당은 3.5% 인상 사안이었기 때문에 공청회는 거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정활동비 인상안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맡겨서 간다고 하니까 나머지 안전에 대한 범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건 별도로 결정을 해서 여론조사 기관에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통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G 위원	의정활동비 금액이 인상되는 경우는 의견 수렴을 거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의정비만 할 때는 공청회를 안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의정활동비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주민 여론 조사나 공청회 그 중에 하나는 거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동희 위원)	그러면 또 위원회에서 여론조사로 할지 공청회로 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위원회에서 여론조사로 할 거냐 방식 결정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여론조사로 간다라고 그런다면 아까 우리 설문조사표에서 문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기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자	발언내용
G 위원	제가 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지금 네 번째인데요. 여론조사 이제 다른 변호사 협회에다가 이제 공청회를 한다고 나와서 토론하실 분들 모집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떤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말을 들어보니까 공청회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 주제 정하는 것도 어렵고, 발표하실 분 섭외하는 것도 어렵고, 또한 기한도 이제는 많이 걸려서 촉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여론조사하고 공청회 각각 장단점이 있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론조사할 때도 최하 금액으로 다 이제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공청회에서 하면 또 똑같아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이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 또 금액을 낮추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높이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자기 측 사람으로 의견 발표하거나 참석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론조사를 하면 랜덤으로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장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저는 여론조사 방식 어떤 절차나 비용 면에서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론조사가 어떻게 보면은 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동희 위원)	네. G 위원님 여론조사 방식 의견 표명이 되셨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참고적으로 공청회 방식 저도 몇 군데를 해봤는데, 그냥 목소리 높은 사람은 저기가 되고 이성적인 토론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간에 부담되기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G 위원 의견을 찬성합니다. 그럼 이것도 그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방식에 찬성하시는 분? 만장일치로 통과된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자료를 보니까요, 2028년 ~ 2030년 월정수당은 인상 시기도 달리 정할 수 있고 3개년 동안 매년 인상을 특정 연도만 인상하는 여러 방식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매년 인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네. 2028년 ~ 2030년까지를 2 ~ 4년차라고 하겠습니다. 2 ~ 4년차까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갈 것이냐 이런걸 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동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사회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희 위원)	네. 그러면 지금은 그걸 결정하는 것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각 항목에 대한 금액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네. 금액 범위에 아까 우리 F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3개 구간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 4개 구간으로 할지 5개 구간으로 할지 금액은 얼마 차이를 두고 할지 여기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여론조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이요.
위원장 (강동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8% 안이 결정된 걸로 아까 의결이 되었고요. 연 16,850,400원입니다. 이걸 월로 계산하면 1,404,200원인데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현재 의정활동비 1안 예사처럼 3개 항목으로 할 것인지 몇 개 항목으로 할 것인지부터 발표를 좀 해 주세요.
E 위원	아까 F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세밀하게 가주려면 한 그레도 4개, 5개는 해줘야 선택 할 수 있는 권한이 조금 폭이 넓어지지 않나 싶어 저는 아까 F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한 5개 정도 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G 위원	5개면 듣다가 까먹을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음성 전화로 1번 2번 이렇게 될까요? 단계가 너무 긴 것 같고 제가 보면 의견 더 자세한 의견을 듣고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4개로 나누는 것 같은데 한 4개가 나올자... 5개라고 그러면 듣다가 까먹을 것 같아요. 되돌려듣기 기능이 없는 한
F 위원	문자로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그냥 다 들어서 하는 건가요?
사회자	네.
G 위원	3개랑 4개. 이렇게 두 가지 안으로 일단 표결하시는 게 맞으실 거 같아요. 2개는 너무 적고요.
위원들	3개 안
위원장 (강동희 위원)	총 3개 안으로 확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3개 안이니까 1,404,200원 선에서 질문할 얼마 초과 얼마 이내 이거를 좀 결정을 해 주십시오. 의견 발표해 주세요. 의견 참고로 과장님 요 구간 과장님이 연구를 하셨을 테니까 의견 안으로 한번 제시해 주실래요? 1,404,200원 기준점으로 해서요.
기획예산과장	금액이 지금 나와서요.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희 위원)	그럼 그 사이에 위원님들 고려할 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발 언 자	발 언 내 용
C 위원	18%가 올랐잖아요. 그럼 18%로 계산해 보면 1,404,200원.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올리는거죠. 그러면 대개 다 제가 볼 때는 1번 짝을 것 같아요. 제가 주민이라도 1번 짝습니다.
G 위원	아니면 거꾸로 질문하는 거죠. 1번으로 145만 원 초과 150만 원 이하 이렇게요.
C 위원	저는 이 금액을 저희가 정한 18% 기준으로 첫 번째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금액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강동희 위원)	그럼 1번이 145 초과 150만원 이내
C 위원	143만원이고 150만원 이내죠. 이렇게 해야 저희가 18%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안되나요?
E 위원	10만 원 간격으로 30에서 40, 40에서 50 이렇게 가야죠. 근데 이제 우려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이쪽으로 하면 최대치로 결정나고 반대로 하면 제일 적은 걸로 결정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되려면 119부터 130, 130부터 140, 140부터 150 이렇게 문항을 10단위로 가야죠.
사회자	안을 한번 제시해주시면 어떨까요.
C 위원	아니 듣다보니까 기존대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F 위원	과장님이 정리해 놓은 게 있으시니까 그거 한번 보고 합시다.
G 위원	단계가 초과 금액으로 하면은 지금 어감 때문에 안될 것 같고, 초과보다는 몇 만 원부터 몇 만 원 사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아. 초과라는 말을 안 쓰고요.
G 위원	네. 근데 처음 딱 낮은 금액 듣는 순간에는 그걸로 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제 말은 거꾸로 해가지고 좀 돌려보자는 거지 했던죠.
F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18%가 픽스된 게 아니라 12%에서 18% 이렇게 열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위원장님은 일단 설명하시기 좋게 18%, 최대 18%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용을 18%로 고정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위원장 (강동희 위원)	아까 그 3개의 안건 중에 우리가 토론으로 의견을 수렴을 했기 때문에 %에 대해서 저한테 결정권을 주셔가지고 아까 26%, 24%, 18% 3개 안건을 거수를 했어요.

발언자	발언내용
F 위원	근데 위원장님 설명 어떻게 하셨냐면 18% 이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정하셨다고요. 18%라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18% 이내에서 인상하면 되겠죠. 이러면서 그렇게 열어놓고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 동의한 거죠. 그러니까 열려 있었던 거죠. 그게 최대치가 18%였던 거죠. 아까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18% 이내면 몇 프로인지 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다음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G 위원	그래서 제가 상한이냐고 여쭙본 거였어요. 설문조사 할 때는 그 구간을 나눠야 되니까 여기서 정하자고 하신 게 그럼 설문조사할 때 최상한을 정하신겁니까라고 여쭙본 겁니다.
위원장 (강동희 위원)	그래서 아까 26% 안도 있고 24% 안도 있고 우리가 토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B 위원님께서 이 아까 12%인 18% 구간을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다른 위원분들이 말씀이 없으셔서 그러면 위원장이 3개의 안건을 결정해가지고 그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18%, 24%, 26.1%를 가지고 저희가 거수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18% 안이 나왔던거죠. 18% 안을 맥시멈으로 해서 이렇게 최하위까지 열어놓고 하지는 의견 개진은 제가 말 표현이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전혀 그건 아니었습니다.
F 위원	예. 그럼 이제 빨리 진행을 해주세요.
위원장 (강동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거부터 결정을 하시자고요. 월 1,404,200원이 18% 반영했을 때 금액이고, 문항을 3개로 하자고 그랬는데요. 예를 들어서 140만 우리가 의도한 대로 하자면 이거를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처럼 1번으로 했을 때 1번으로 하면 그러면은 1번의 구간을 135만 원에서 1,404,200원으로 하고, 그러면 2번은 130만 원에서 135만 원 구간으로 하고 3번을 119만 원에서 130만 원 구간으로 하는 안을 위원장이 제시해 드립니다.
위원장 (강동희 위원)	1번 문항 135만 원에서 1,404,200원 그다음에 2번 문항이 130만 원에서 135만 원, 3번 문항이 119만 원에서 130만 원 이렇게 하는 데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위원장 (강동희 위원)	네. 전원 일치로 그렇게 3개 문항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확정되었습니다.
위원장 (강동희 위원)	그러면 주민의견수렴 방법은 여론조사로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또 여론조사 금액과 설문 질문까지 아까 말한 것처럼 각각 결정되었습니다. 폐회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10월 중에 다음 회의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회의 개최 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